

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	펀드명	환매 수수료 삭제	결산	변동성	변경사항
1	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(국공채)	○	-	-	7)
2	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(주식)	○	○	○	-
3	미래에셋웰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투자자신탁1호(채권)(분배형)	○	○	○	4), 7)
4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(주식혼합)	○	○	○	4), 7)
5	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2.0증권투자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○	-	-	7)
6	미래에셋코리아레버리지2.0증권투자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○	-	-	7)
7	미래에셋MMF1호	-	○	○	4), 7)
8	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투자자신탁2호(주식-재간접형)	-	○	○	4), 7)
9	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투자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	-	○	-	4), 7)
10	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투자자신탁1호(H)(주식)	-	○	○	4), 7)
11	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투자자신탁1호(UH)(주식)	-	○	○	4), 7)
12	미래에셋러브에이지변액보험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-	○	○	4), 6), 7)
13	미래에셋러시아인덱스증권투자자신탁(주식)	-	-	-	7)
14	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투자자신탁(일반상품-파생형)	-	○	○	-
15	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투자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16	미래에셋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-재간접형)	-	○	○	4), 7)
17	미래에셋베트남고배당IPO증권투자자신탁(H-USD)(주식-파생형)	-	○	○	4), 7)
18	미래에셋베트남고배당IPO증권투자자신탁(UH)(주식)	-	○	○	4), 7)
19	미래에셋변액보험고배당증권투자자신탁(주식)	-	○	-	6), 7)
20	미래에셋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혼합)	-	○	○	4), 7)
21	미래에셋연금선진시장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-재간접형)	-	○	○	4), 7)
22	미래에셋연금저축베스트컬렉션증권투자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○	○	4), 7)
23	미래에셋연금한국헬스케어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-	○	○	4), 7)
24	미래에셋이머징달로우량국공채증권투자자신탁(H)(채권)	-	○	○	4), 7)
25	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증권투자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	-	○	-	-
26	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-	○	-	-
27	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증권투자자신탁2호(주식)	-	○	○	7)
28	미래에셋코스닥혁신성장증권투자자신탁(주식)	-	○	○	4), 5), 6), 7)
29	미래에셋차이나H인덱스증권투자자신탁2호(주식)	-	-	-	7)
30	미래에셋토티크연금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-	○	○	4), 7)
31	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1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-	○	○	7)

2. 변경 사항:

- 1) 환매수수료 삭제
- 2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3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4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- 5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6) 법 개정사항 반영
- 7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2년 9월 8일 (목)

4. 변경 내용:

- 1) 환매수수료 삭제

-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(국공채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 (환매수수료)	<p><u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 (제24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 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u></p> <p><u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u></p> <p><u>1. 종류A-U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이익금의70%</u></p> <p><u>2. 종류C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</p> <p><u>3. 종류CG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</p> <p><u>4. 종류C-1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</p> <p><u>5. 종류F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</p> <p><u>6. 종류C-P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</p>	<p><u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</p>

	<u>7. 종류C-Pe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 <u>8. 종류C-P2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 <u>9. 종류C-P2e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	
--	-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<u>[A-U] 90 일미만:이익금의 70%</u> <u>[C, CG, C-1, F, C-P, C-Pe, C-P2, C-P2e] 없음</u>	<u>환매수수료 없음</u>

- 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(주식)

[정관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3조의1 (환매수수료)	<p>①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2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주주가 그 주식을 보유한 기간(당해 주식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회사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종류A 주식: 없음</p> <p>2. 종류 C주식, 종류 C2 주식, 종류C3 주식, 종류 C4 주식, 종류C-e 주식, 종류CG 주식, 종류 S 주식, 종류 I 주식 <개정 2014.04.23> <개정 2015.07.23> <개정 2017.09.15></p> <p>가.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나. 90일 이상: 없음</p>	<p><u>판매회사는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<u>[A, A-e, AG] 없음</u> <u>[C, C2, C3, C4, C-e, CG, S, I] 90 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	<u>환매수수료 없음</u>

-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(분배형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 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 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 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종류A 수익증권 30일 미만:이익금의 10%</p> <p>2. 종류A-e 수익증권 30일 미만:이익금의 10%</p> <p>3. 종류C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 70%</p> <p>4. 종류C-e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 70%</p> <p>5. 종류CG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 70%</p> <p>6. 종류S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 70%</p>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 환매수수료 >	<p>A, A-e] 30 일 미만:이익금의 10%</p> <p>[C, C-e, CG, S] 90 일미만:이익금의 70%</p>	<p>환매수수료 없음</p>

-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회사(주식혼합)

[정관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
제23조 (환매수수료)	<p>①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주주가 그 주식을 보유한 기간(당해 주식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회사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종류 C1주식, 종류 C2 주식, 종류C3 주식, 종류 C4 주식, 종류 C5 주식, 종류 C-e 주식, 종류CG 주식 <개정 2017.09.15></p> <p>가. 90일미만 : 이익금의 70%</p> <p>나. 90일이상: 이익금의 0%</p>	판매회사는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
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[C-e, C1, C2, C3, C4, C5, CG] 90 일미만: 이익금의 70%	환매수수료 없음

-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2.0증권자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 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4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	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

	<u>1. 종류A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 <u>2. 종류A-e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 <u>3. 종류A-U 수익증권</u> <u>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4. 종류C1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 <u>5. 종류C2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 <u>6. 종류C3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 <u>7. 종류C4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 <u>8. 종류C-e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 <u>9. 종류C-W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 <u>10. 종류S 수익증권</u> <u>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	
--	-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[A, A-e, C1, C2, C3, C4, C-e, C-W] 없음 [A-U, S] 9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	환매수수료 없음

- 미래에셋코리아레버리지2.0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 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 (제24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 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</p>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

	<p>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<u>종류A 수익증권</u> 해당사항없음</p> <p>2. <u>종류A-e 수익증권</u> 해당사항없음</p> <p>3. <u>종류A-U 수익증권</u>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4. <u>종류C1 수익증권</u> 해당사항없음</p> <p>5. <u>종류C2 수익증권</u> 해당사항없음</p> <p>6. <u>종류C3 수익증권</u> 해당사항없음</p> <p>7. <u>종류C4 수익증권</u> 해당사항없음</p> <p>8. <u>종류C-e 수익증권</u> 해당사항없음</p> <p>9. <u>종류C-W 수익증권</u> 해당사항없음</p> <p>10. <u>종류S 수익증권</u>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	
--	-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[A, A-e, C1, C2, C3, C4, C-e, C-W] 없음 [A-U, S] 9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	환매수수료 없음

3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MMF1호	6	6	<u>0.06</u>	<u>0.05</u>
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2호(주식-재간접형)	2	2	<u>15.67</u>	<u>15.26</u>
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(H)(주식)	2	2	<u>20.56</u>	<u>19.63</u>
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(UH)(주식)	2	2	<u>18.8</u>	<u>19.15</u>
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(주식)	2	2	<u>24.68</u>	<u>24.28</u>
미래에셋러브에이지변액보험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3.91</u>	<u>23.11</u>
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투자신탁(일반상품-파생형)	2	2	<u>19.28</u>	<u>23.26</u>
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5	5	<u>4.32</u>	<u>3.98</u>
미래에셋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-재간접형)	2	2	<u>21.12</u>	<u>20.68</u>

미래에셋베트남고배당IPO증권투자자신탁(H-USD)(주식-파생형)	2	2	<u>15.81</u>	<u>17.56</u>
미래에셋베트남고배당IPO증권투자자신탁(UH)(주식)	2	2	<u>16.65</u>	<u>18.41</u>
미래에셋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혼합)	3	3	<u>13.41</u>	<u>13.36</u>
미래에셋연금선진시장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-재간접형)	2	2	<u>19.24</u>	<u>19.74</u>
미래에셋연금저축베스트컬렉션증권투자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8.18</u>	<u>8.5</u>
미래에셋연금한국헬스케어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1	1	<u>33.19</u>	<u>30.14</u>
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투자자신탁1호(채권)(분배형)	5	5	<u>3.47</u>	<u>4.04</u>
미래에셋이머징달러우량국공채증권투자자신탁(H)(채권)	4	4	<u>8.4</u>	<u>9.07</u>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(주식혼합)	2	2	<u>18.77</u>	<u>18.81</u>
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증권투자자신탁2호(주식)	2	2	<u>23.66</u>	<u>24.27</u>
미래에셋코스닥혁신성장증권투자자신탁(주식)	1	1	<u>32.53</u>	<u>30.31</u>
미래에셋퇴직연금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0.65</u>	<u>19.61</u>
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1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4	4	<u>7.7</u>	<u>8.07</u>

4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2.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(1) 평가방법	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 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<u>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</u>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</p>	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(<u>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</u>)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 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(<u>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</u>)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(<u>외국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</u>)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(<u>해외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</u>)</p>

5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
제53조(고난도금융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-----------------	----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<신설>	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해당 사항 없음

6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<u>투자신탁재산</u> 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</u>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생략>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생략>	<삭제>
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2. <생략>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, <생략>	2. <생략> 나. <삭제>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 ②~③ <생략>	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②~③ <생략>

	<신설>	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-	----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8. 가. 투자대상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생략>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생략>	<삭제>
제2부 8. 나. 투자제한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, <생략>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삭제>

7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부. 1. 가. 회사의 개요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- 일반사무관리회사 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</u>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<삭제>
제4부. 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	회사명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(주)</u>	회사명: <u>한국펀드파트너스(주)</u>

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계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